

# 안산시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3154호
- 제 출 자 : 김진희 의원 외 8인
- 제 출 일 : 2018년 4월 17일
- 회 부 일 : 2018년 4월 18일

## 2. 제안이유

- 안산시 여성합창단원의 연령을 19세 이상 65세 이하 여성으로서 합창에 소질 있는 여성이 잠재능력 발휘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안산시 관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여성을 『19세 이상 65세 이하』(안 제7조)

##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안산시여성합창단의 자격조건을 완화하여 여성으로서 잠재능력 발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에 위반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다만 부서의 검토의견에 연령을 타 시군사례와 같이 나이제한을 삭제함으로써 확정성을 두자는 의견과 나이와 성별제한을 하지 않고 안산시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 누구나 합창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안산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 3155 호
- 제 출 자 : 전준호 의원 외 7인
- 제 출 일 : 2018년 4월 17일
- 회 부 일 : 2018년 4월 18일

## 2. 제안이유

-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

## 3. 주요내용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 (안 제3조)
- 안산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평가 (안 제5조)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정하여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 (안 제 6조)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민관협력 근거 마련 (안 제 7조)
-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의 시행을 위한 위탁 및 재정 지원 근거 마련(안 제 8조, 안 제 9조)

##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난 2015.12.29일에 제정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17.12.30. 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에 근거하여 안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 현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인 건강권 존중·보호, 장애인에 대한 진료·재활의료 제공, 장애인 건강위험 예방,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 인구가 상대적 많은 우리시에서 2017.12.30 법 시행과 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 사업의 지원에 관한 규정과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은 인정되나, 조례안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권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해서는, 상위법에서 대부분의 사무를 “조례”가 아닌 “대통령령” 내지 “보건복지부령”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안산시 4·16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 폐지 조례안 검 토 보 고

##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 2156 호
- 제 출 자 : 손관승 의원 외 7인
- 제 출 일 : 2018년 4월 17일
- 회 부 일 : 2018년 4월 18일

## 2. 제안이유

- 상위법에 명시적 근거가 없어 폐지함.

## 3. 주요내용

- 『안산시 4·16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 폐지

## 4. 검토의견

- 본 폐지 조례안은 지난 2018년 1월 8일 제정된 「안산시 4.16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에 대해 손관승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였으며 폐지 근거로 상위법에 명시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 「안산시 4.16세월호 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와 통합하여 운용코자 하는 사안으로

- 「안산시 4.16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 조례」는 주민 청구(총 8,796명, 유효6,166명)를 통해 제정된 조례로 본 조례에 대한 폐지이유로 들고 있는 상위법의 명시적 근거에 대해서는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1항과 제2항에서 “피해자와 피해지역에 대한 포괄적 지원에 대한 종합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어 본 조문에 대한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최근 추모공원과 관련하여 지역의 갈등이 형성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폐지 조례안에 대한 충분하고 심도 있는 의원간 검토와 다양한 의견의 청취를 통한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산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 3157호
- 제 출 자 : 손관승 의원 외 7인
- 제 출 일 : 2018년 4월 17일
- 회 부 일 : 2018년 4월 18일

## 2. 제안이유

- 4·16 세월호 참사의 피해극복과 협의회 운영 등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극복 활동 및 지원과 안전도시 건설계획 수립을 위해 조문을 전문 개정함.

## 3. 주요내용

- 조례의 총칙과 지원 운영 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명확히 함.
- 조례의 목적과 구체적 실현수단을 명확히 함 (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 (안제3조)
- 4·16 세월호 참사에 따른 안전도시 건설 계획수립 하도록 함. (안제4조)
- 4·16 참사 피해극복 활동 및 지원하도록 규정함 (안제5조~안제7조)
- 4·16 세월호 참사 피해극복 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하도록 함(안제8~제18조)

## 4.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안산시 4.16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이하 “기본조례”라 한다)를 폐지하고 「안산시 4.16세월호 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구성 및 운영조례」에 기본조례가 담고 있는 일부 조항을 포함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안이며, 선행적으로 기본조례 폐지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본 조례에 폐지를 하고자 하는 기본조례가 갖고 있는 조문에 대한 삽입 및 보완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 1. 제안이유

- 의안번호 : 제3141호
- 제 출 자 : 안산시장
- 제 출 일 : 2018년 4월 11일
- 회 부 일 : 2018년 4월 18일

## 2. 대상사업 : 경기테크노파크 부지 매입안

### 가. 제안이유

- 경기테크노파크 조성 당시 한양대학교가 부지를 제공하였고, 추후 이에 상응하는 토지를 안산시와 한양대가 협의하여 교환하기로 함.
- 2003년 안산시와 한양대학교가 부지교환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부지 교환을 목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2015년에 제3토취장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안산시로 무상양여가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부지 교환 협의를 진행됨.
- 2017년에 교환대상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나, 기반조성비에 대해 양 기관의 이견 발생
  - ※ 기반조성비 : 경기테크노파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한 토지조성에 투입된 비용
- 기반조성비를 고려한 양측의 주장은, 안산시는 교환차액(안산시가 한양대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이 약 108억원이라는 입장이며 한양대는 교환

차액이 약 37억원이라는 입장임.

- 교환차액을 확정하고자 2018.1.26. 법원 조정 신청
- 교환차액에 대한 논의 중에, 한양대에서 대학 여건상 교환차액에 대한 현금정산이 어렵다는 입장표명이 있어, 기반조성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경기테크노파크부지만을 안산시가 매입하는 것에 대한 한양대의 의견을 요청하였고, 한양대가 이를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회신함.
-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인 경기테크노파크의 발전을 위해 부지 소유권을 안산시가 확보할 필요가 있고, 기반조성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안산시가 해당 부지를 매입한다면, 최소한의 금액으로 부지를 매입할 수 있고, 2003년부터 진행해 온 부지교환 협약을 안산시와 한양대학교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할 수 있음.
- 또한, 제3토취장은 안산시 소유로 남게 되어, 89블록 및 90블록과 연계한 개발사업이 가능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안산시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 경기테크노파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 매입 개요

- 매입가격 : 금61,490,067,750원(감정평가액 - 기반조성비 전액)
- 대상부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안산시 상록구 사동	1271-11	학교용지	66,655.9m <sup>2</sup>	경기테크노파크

○ 위치도



○ 매입조건 : 2003년 부지교환 협약 무효화 및 현재 진행중인 법원 조정 취하(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이후)

□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

- 부지교환 협약 체결(안산시↔한양대) : 03.07.30.
- 제3토취장 무상양여(수자원공사→안산시) : 15.07.06.
- 교환관련 실무협의 체결(안산시↔한양대) : 17.01.31.
- 감정평가 완료 : 17.09.10.
- 경기도 사전컨설팅 감사 : 17.11.27.
- 교환차액 현금정산 어려움 표명(한양대) : 18.02.28.
- 경기TP부지 매각 검토 요청(안산시→한양대) : 18.03.07.
- 경기TP부지 매각 동의(한양대→안산시) : 18.03.16.
- 경기TP부지 매입 추진 계획 : 18.03.30.
- 공유재산 심의회 가결 : 18.04.04.
- 매매협약 체결(안산시↔한양대) : 18.08.31.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18년 하반기
- 예산편성 : 18년 하반기
- 매매계약 체결 : 18년 하반기

## 다. 검토의견

- 본 관리계획안은 안산시가 반월·시화산업단지 배후도시로 국내최초로 계획된 산업도시로 출발하면서 산업단지 인근 한양대 부지 주변을 산업단지와 연계한 산업기술지원 및 과학단지 조성을 통해 산업단지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경기테크노파크(당시 안산테크노파크)를 한양대가 소유한 부지에 조성하여 1999년부터 무상으로 임대하여 13년간 사용하여 왔으며, 2012년부터는 한양대와 유상임대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는 중으로,
- 당초 수자원공사가 한양대학교내 반월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토취를 하면서 조성한 제3토취장을 2015년 안산시에 무상양여하는 것이 완료됨에 따라 2003년 한양대와 체결한 제3토취장과 한양대 소유(경기테크노파크, 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연구원) 부지와의 교환에 대한 협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양대에서 대학 여건상 부지간 교환에 있어 안산시에 지불해야 할 차액 108억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어 안산시에서는 현재 한양대 부지인 경기테크노파크부지를 61,490,067,750원에 매입하고 127,624,008,000원으로 평가되는 제3토취장을 그대로 소유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 향후 경기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한 한양대, 89블럭, 90블럭과 인근 제3토취장 등 인근 부지 개발에 따른 산업 기술단지화(특구조성등)를 위해 경기테크노파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경기테크노파크부지 매입시 현재 본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기테크노파크에 우리시의 매입에 따른 재정적 부분에 대한 환원방법을 찾아 추진해야 할 것이며, 향후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한국전기연구원에 대한 임대기간 만료시 조치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용도가 학교부지로 되어있는 제3토취장에 대한 가치 있는 활용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3138호
- 제 출 자 : 안산시장
- 제 출 일 : 2018년 4월 11일
- 회 부 일 : 2018년 4월 18일

## 2. 제안이유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외국인 지원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 관련 조항 삭제(안 제7조 및 제8조)
- 지원단체 및 업무 위·수탁 대상 범위 확대(안 제2조, 제20조)
- 안산시 외국인주민협의회 설치·운영근거 마련(안 제8장, 제37조~제41조)

## 4. 검토의견

### 가. 개요

- 본 조례안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외국인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 나. 주요 개정내용

- 다문화 지원본부의 신설 및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안 제7조, 안 제8조)

###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0조(사업소의 조직 및 소관사무) 사업소의 조직과 사업소의 장이 맡아 처리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다문화지원본부에는 다문화정책과, 다문화지원과를 두며, 본부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 가. 안산시다문화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 나. 거주외국인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다. 다문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라. 외국인 인권에 관한 사항

- 지원단체 및 업무 위·수탁 대상범위 확대(안 제20조)

- 상담지원센터 운영능력이 있는 일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위수탁 대상을 확대(외국인주민 지원을 주된 사업→외국인주민 지원 등의 사업)
- 상위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위탁기간 확대(3년→5년)

- 안산시 외국인 주민협의회 설치·운영근거 마련(안 제37조~제41조)

- 안산시 외국인주민 협의회 구성과 기능 규정 신설
- 협의회 운영 및 위원의 위·해촉과 수당 등 규정 신설

## 다. 종합검토의견

- 먼저, 개정안에서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 설치 및 기능, 운영에 대한 조항은 다문화지원본부의 신설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0조에 따라 다문화지원본부의 운영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관련 사무를 분장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에 대한 위·수탁 대상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은 현행 지원단체의 범위가 외국인 주민 지원을 주된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단체로 규정하고 있어 공개모집에 따른 위탁 대상자 선정폭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위탁단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정한 경쟁을 통한 효율적 업무수행에 적합한 비영리법인과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 한편, 외국인주민 협의회 설치·운영근거를 마련하여 협의회 구성과 기능, 위원의 해촉과 수당 등을 규정하여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외국인 지원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상위 법령과의 상충 또는 위반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 1. 제안이유

- 의안번호 : 제3139호
- 제 출 자 : 안산시장
- 제 출 일 : 2018년 4월 11일
- 회 부 일 : 2018년 4월 18일

### 2. 제안이유

-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18. 5. 31.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
-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외국인의 상담지원 업무를 효율성있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고자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 3. 주요내용

#### 가. 위탁사업

-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운영현황

구 분	주 요 내 용
시설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센터장 : 이복경</li> <li>○ 소재지 :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 43(원곡동, 다문화지원본부 2층)</li> <li>○ 규 모 : 76,5㎡(23평)</li> <li>○ 위탁사무 :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운영</li> <li>○ 직원현황 : 13명(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팀장 1명, 상담원 10명)</li> <li>○ 상담분야 : 외국인 주민 전화·방문·출장 상담에 관한 업무 생활정보제공, 법률 관련 및 출입국등, 외국인 고충 상담 등</li> </ul>

운영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명 : 사회복지법인 안산제일복지재단</li> <li>○ 대표이사 : 허요환</li> <li>○ 소재지 : 안산시 상록구 시낭공원안길 22(부곡동 715-1)</li> <li>○ 위탁기간 : 2015. 6. 1. ~ 2018. 5. 31.(3년)</li> </ul>
예산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비 : 금291,070천원(2017년 보조금)</li> </ul>

#### 나. 주요위탁내용

- 위탁대상 :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 위탁기간 : 3년(2018. 6. 1. ~ 2021. 5. 31.)
- 위탁사무 :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운영·사업 일체
- 위탁예산 : 340,560천원(2018년 제1회 추경예산 기준)
  - 외국인주민 상담지원 : 39,000천원
  -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운영지원 : 301,560천원

#### 다. 민간위탁추진근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0조, 제21조
-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0조
-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1조

#### 라. 민간위탁의 필요성

-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에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외국인의 상담지원 업무를 효율성 있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고자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마. 예산조치 : 2018년 민간위탁금 예산 편성 완료

#### 4. 검토의견

-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은 민간위탁을 통한 서비스 품질의 향상, 전문성의 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한 이용자의 복지향상과 같은 질적 측면에서 효과가 뚜렷한지 여부가 핵심 요소라 할 것임.
  
-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운영 사무는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고용업체 사업주,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생활정보제공, 법률·생활 상담 및 외국인주민 고충상담 등으로, 그 특성상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 경험에 기반 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의 노하우를 지닌 민간단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한다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외국인주민 상담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는 본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외국인주민 상담지원센터 운영 결과 최근3년간 년35,000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외국인 상담분야는 임금·연금·보험·근로관계·체류지원에 관한 사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향후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적격자 심의 절차 등이 추진될 경우 이상의 사항을 유념하여, 민간위탁을 통한 성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효율적 운영방안이 모색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산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3135호
- 제 출 자 : 안산시장
- 제 출 일 : 2018년 4월 11일
- 회 부 일 : 2018년 4월 18일

## 2.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의 전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 조항 정비 (안 제1조)
- 손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안 제7조)

## 4. 검토의견

### 가. 개요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에 근거 없는 규제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 나. 개정조례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제명을 「안산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은 지역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업무를 보건소에서 분장하고 있으므로 소관부서명을 삭제하더라도 개정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 안 제1조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를 의료인에게 대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위법령 개정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인바, 동 개정 내용은 그 필요성이 인정됨.
- 안 제7조는 업무대행자의 귀책사유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으로써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개정내용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안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3136호
-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출일 : 2018년 4월 11일
- 회부일 : 2018년 4월 18일

## 2.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정비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정비함.

## 3. 주요내용

- 조례의 적용 근거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부과기준과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안 제2조, 안 제3조)
  -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

「지역보건법」

제34조(과태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과태료의 부과·징수·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4. 검토의견

- 「지역보건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이하거나 조례의 적용 근거 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안산시의 경우 과태료 부과 실적은 없으나, 조문의 변경된 사항을 반영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3137호
- 제 출 자 : 안산시장
- 제 출 일 : 2018년 4월 11일
- 회 부 일 : 2018년 4월 18일

## 2.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및 기능 정비

## 3. 주요내용

- 상위법에 따른 위원회 및 협의회 명칭 변경을 위한 제명 변경,
- 조례 제정 근거조항 정비(안 제1조)
-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하여 기능 정비 및 각 호의 사항 삭제 (안 제2조)

## 4. 검토의견

### 가. 개요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과 「국민건강진흥법」 에 따른 위원회 및 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나. 주요검토사항

- 안 제2조 위원회 및 협의회 기능은 상위법령에 따라 명칭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각각 약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수정안>

개 정 안	수 정 안
<p><b>제2조(기능) 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한다.</b></p>	<p><b>제2조(기능) 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지역보건법」 제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한다.</b></p>

- 안 제3조 위원회는 현행 단일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협의회를 포함하도록 하여 기능규정과 같이 통일적으로 규정

### <수정안>

개 정 안	수 정 안
<p><b>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b></p> <p>② (생략)</p> <p>③ (생략)</p>	<p><b>제3조(구성) ① 위원회(이하 “협의회”를 포함한다) -----</b></p> <p>-----.</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 다. 종합 검토의견

- 제명을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및 협의회 명칭에 맞도록 변경하고,
- 안 제1조는 지역보건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관련법령인 「지역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 건강생활실천위원회 명칭을 건강생활실천협의회로 개정하려는 것인바, 동 개정 내용은 그 필요성이 인정됨.

- 안 제2조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및 협의회 기능을 정비하고,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서 규정한 각 호의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개정내용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다만, 일부 조항에서 일반적인 입법례에 맞추어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안산시 조례 중 다자녀 가정 및 임산부 지원 관련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검 토 보 고

##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3152호
- 제 출 자 : 안산시장
- 제 출 일 : 2018년 4월 11일
- 회 부 일 : 2018년 4월 18일

## 2. 제안이유

- 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sup>1)</sup>에 따라, 안산행복플러스카드 발급대상자가 임산부까지 확대되어 시행시기 연계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한 관련 조례 정비
- 신속한 일괄정비 추진으로 관련부서 개별 추진에 따른 시기 지연 등을 최소화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

## 3. 주요내용

-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0개 관련조례 정비
  - 이용료(사용료) 등의 감면대상 중 ‘다자녀 가정’을 ‘다자녀 가정 및 임산부’로 정비 및 제명 일부 정비(안 제1조 ~ 안 제10조)

1)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 개정 등 일부개정 중

#### 관련조례 감면내용

-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50% 감면
- 어촌민속박물관·성호기념관 관람료 면제
- 안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도서관난감 대여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 면제
- 여성비전센터 사용료(수강료) 면제
- 공영유료주차장 주차요금(3시간) 면제 및 50% 감경(3시간 초과)
- 안산시 오토캠핑장 사용료 50% 감면
- 수도요금 감면(누진 미적용 등)
- 백운공원 썰매장 50% 감면
- 안산시 평생학습관 수강료 면제

##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안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원활한 시행을 통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안산시 행복플러스카드 발급대상자를 임신부까지 확대함에 따라 시행 시기 연계 등 원활한 시행과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다자녀가정 공공시설 이용료(사용료)등 감면혜택을 임신부까지 확대 적용토록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출산장려정책에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